

##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정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 심장질환 ⑥

### 급성심근경색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2. 25 선고, 92구7049 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9조의 6, 제9조의 8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

#### 판결요지

택시운전기사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야간근무를 마치고 사내 탁구장에서 탁구를 친 후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판결이유

#####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

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망부인 소외 안○화는 1942. 7. 16생(사고당시 만 49세)으로서 1986. 10. 28. 택시운수 업체인 D흥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야간근무조로 1991. 5. 3. 17:30경 차량을 출고하여 다음



